

영등포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10. 2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59호로 2019년 10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여 행정기구와 분담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의 삶에 직결된 사업부서 중심으로 국 편제(안 제3조)

-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행정지원국

나. 구정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

(안 제5조, 안 제6조)

- 소통기획과와 재정관리과를 통합하여 ‘기획예산과’로 신설
- 미래비전추진단의 비전협력과(대외협력, 국제금융특구, 의료특구) 신설

다. 구 정책사업의 메시지 부여를 위한 명칭변경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1조)

- 재정국 → 기획재정국
- 행정국 → 행정지원국
- 보육지원과 → 여성가족과
- 홍보전산과 → 홍보미디어과

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 편제 변경 · 업무이관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

- 부서편제 변경
 - 일자리경제과 ↔ 재무과
 - 미래교육과 ↔ 사회적경제과
 - 문화체육과 ↔ 민원여권과
- 업무이관
 - 의회법무: 재정관리과 → 총무과
 - 지역협치: 사회적경제과 → 자치행정과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의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성과를 최대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현황포 참조)을 살펴보면,

※ 주요내용 현황포

국 편제변경	▶ <u>미래비전추진단, 행정국, 재정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교통국</u> ⇨ <u>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행정지원국</u>	(안 제3조)
부서 통합	▶ 소통기획과+재정관리과 ⇨ 기획예산과	(안 제5조)
부서 신설	▶ 비전협력과	(안 제6조)
부서 명칭변경	▶ 재정국 ⇨ 기획재정국 ▶ 행정국 ⇨ 행정지원국 ▶ 보육지원과 ⇨ 여성가족과 ▶ 홍보전산과 ⇨ 홍보미디어과	(안 제5조) (안 제3, 11조) (안 제7조) (안 제3, 11조)
부서 편제변경	▶ 일자리경제과↔재무과 ▶ 미래교육과↔사회적경제과 ▶ 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
업무이관	▶ 의회법무: 재정관리과 → 총무과 ▶ 지역협치: 사회적경제과 → 자치행정과	(안 제11조) (안 제11조)

- 안 제3조에서는 국 편제를 변경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재정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

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통기획과와 재정관리과를 통합하여 기획예산과를 신설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와 재무과의 부서 편제를 변경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미래비전추진단에 비전협력과를 신설하여 대외교류, 국제금융지구 활성화, 의료특구업무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토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보육지원과를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홍보전산과를 홍보미디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체육과와 민원여권과의 부서 편제를 변경하였음.
- 국간 업무 이관사항으로는,
 - 안 제11조에서는 행정국 소관업무에 의회협력, 법제심사, 지역협치업무를 추가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으로

현재, 8국(소), 1단, 1담당관, 36과, 2전문위원, 18동, 222팀이,

2020년 1월부터, 8국(소), 1단, 1담당관, 36과, 2전문위원, 18동, 216팀으로 조정되어 6개의 팀이 감소됨.

-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구정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행정수요의 질적, 양적변화가 매우 급격하고도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관리의 탄력적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한 바, 조직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문제점을 규명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는 상시화된 노력이 요청되는 바임.

또한, 우리구 특성에 기초하여 조직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사무의 성격과 업무량의 적정 분담을 통하여 조직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한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